1. 자녀 공교육실비 특별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비용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별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관계 관련 용어

1. 계약자: 회사와 특별약관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2.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3. 보험증권: 특별약관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4.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②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1.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2. 표준이율: 회사가 최소한 적립해야 할 적립금 등을 계산하기 위해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이율로서, 이 특별약관이 부가된 기본계약(이하「기본계약」이라 합니다)의 계약체결시점의 표준이율을 말합니다.
3. 해지환급금: 특별약관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③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1.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2.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④ 보험료 관련 용어

1. 보험료: 손해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피보험자가 제4조(교육기관 및 교육비의 정의) 제1항에서 정한 교육기관에 재학함으로써 발생된 제4조(교육기관 및 교육비의 정의)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한 교육비 중 피보험자가 해당 교육기관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이하「공교육실비」라 합니다)을 공교육실비 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제4조(교육기관 및 교육비의 정의) 제2항에서 정한 교육비에서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해당 교육기관에 납입한 경우에는 장학금을 차감하기 전의 교육비를 기준으로 공교육실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피보험자 장학금 수령시 보상금액 예시>
20XX년 1학기 고지서상 수업료 500만원, 장학금 200만원 피보험자가 수업료에서 장학금을 차감하고 실제 300만원을 납입한 경우, 공교육실비 보험금 500만원 지급(실제 납입한 금액 300만원 + 장학금 200만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제4조(교육기관 및 교육비의 정의)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해외 대학교에 재학함으로써 발생된 공교육실비는 매년 이 특별약관의 계약해당일(단, 해당년도에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해당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로 합니다. 이하「계약해당일」이라 합니다)을 기준으로 연간 2천만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보험기간 중에 지급하는 공교육실비 보험금의 합계액은 1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된 공교육실비 보험금 중 피보험자의 교육과정 등록취소 등으로 인하여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환급받은 교육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즉시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환급받은 교육비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공교육실비 보험금에서 반환해야 할 금액을 공제한 후, 공교육실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4조 (교육기관 및 교육비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교육기관」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내 교육기관

가. 국내「초·중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에 해당하는 학교 중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고등 교육과정의 각종학교, 고등 교육과정의 특수학교(이하「고등학교」라 합니다)

나. 국내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와「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한국과학기술원법」,「광주과학기술원법」,「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단, 전문학사과정 또는 학사과정에 한하며,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은 제외합니다. 이하 「대학교」라 합니다)

2. 국외 고등교육기관 :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국내의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해당하는 학교(단, 국내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에 해당되는 국외의 교육기관은 제외합니다. 이하 「해외 대학교」라 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교육비」라 함은 피보험자가 교육기관에서 정규 교육과정(어학연수, 기타연수 등 제외)을 이수하는 경우에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고지서에 기재된 항목 중 아래에 정한 항목(이하「교육비 항목」이라 합니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1. 국내 교육기관

가. 고등학교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방과후학교 수업료(해당 교육기관에 실제 납입한 방과후학교의 교재비 및 재료비 포함)

나. 대학교 :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2. 해외 대학교 : 입학금, 수업료

③ 제2항의 교육비는 아래에서 정한 교육비 항목별「기준일」이 보험기간 중에 속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교육기관		교육비 항목	기준일
국내 교육기관	고등학교	입학금	입학일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해당 학기의 시작일
		방과후학교 수업료	방과후학교 수업 시작일
	대학교	입학금	입학일
		수업료 및 기성회비	해당 학기의 시작일
해외 대학교		입학금	입학일
		수업료	해당 학기의 시작일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입학금 이외의 교육비 항목의 경우 해당 교육비 항목의 기준일 이후에 이 특별약관의 보장이 개시되었더라도 보장개시일에 해당 교육비 항목의 학기(단, 방과후학교 수업료는 수업기간)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교육비 항목에 해당하는 교육비도 제2항의 교육비에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⑤ 관련 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1항의 교육기관 또는 제2항의 교육비 항목의 명칭 등

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교육기관 및 교육비 항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제5조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3. 피보험자가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발급한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해외 대학교일 경우 학생 비자 포함)
4. 보험금 지급을 위한 증명서(피보험자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의 명목으로 발급한 고지서 및 납입증명서, 직전학기 납입증명서 등)
5.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제6조 (보험금의 분담)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공교육실비에 대하여 공교육실비를 지급할 다수계약(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 계약의 공교육실비 보상책임액에 따라 제2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공교육실비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②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발생한 공교육실비를 초과하는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비례 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계약별 공교육실비 비례분담액 =		
공교육실비	×	각 계약별 공교육실비 보상책임액
		각 계약별 공교육실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③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공교육실비를 비례분담하는 경우 제8조(최저보장차액에 관한 사항) 제1항에서 최저보장차액을 계산할 때의 공교육실비 보험금은 제1항의 공교육실비 비례분담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5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

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본계약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별표1]「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8조 (최저보장차액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상받은 공교육실비 보험금의 합계액이 2천만원보다 적은 경우, 2천만원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공교육실비 보험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이하「최저보장차액」이라 합니다)을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의 최저보장차액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최저보장차액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최저보장차액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통약관 [별표1]「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의 만기환급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④ 제1항에서 정한 최저보장차액이 지급된 이후 그 지급해당일 이전에 발생한 교육비 항목에 대해 보험수익자가 공교육실비 보험금을 청구하였을 경우에는 지급해야 할 공교육실비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최저보장차액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제3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9조 (특별약관의 체결)

① 이 특별약관은 자녀 공교육실비 전환 특별약관이 부가된 기본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으며, 기본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기본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별약관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특별약관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표준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특별약관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0조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계약자가 회사에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는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계약자 사망시점에 지정되어 있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됩니다. 그러나 계약자가 사망한 이후 그 승계인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드리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11조 (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14년 4월 13일
⇒ 2014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5년 6개월 11일 = 26세

제12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과 2천만원에서 사망시점까지 발생한 공교육실비 보험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제4관 보험료의 납입 등

제13조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

이 특별약관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로 합니다.

제14조 (특별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일시납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료는 기본계약의 보험료와 별도로 납입합니다.

제15조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30세 계약해당일까지로 합니다.

제5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16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보험금 수령 이후 임의해지 제한)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공교육실비 보험금의 지급이 1회 이상 발생한 이후에는 더 이상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17조 (계약자의 특별임의해지 허용)

① 제16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보험금 수령 이후 임의해지 제한)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에게 아래 각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과 2천만원에서 해지시점까지 발생한 공교육실비 보험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중 큰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2. 피보험자가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 판

정을 받은 경우

3. 피보험자가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가 된 경우

<용어풀이>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 제2호에서 「장애등급 판정기준」이「장애인복지법」및「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애등급 판정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장애등급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특별임의해지 허용여부를 판정합니다.

제18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미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한 보험금 지급>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변조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실제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1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19조 (해지환급금)

① 이 특별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통약관 [별표1]「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6관 기타사항

제20조 (준용규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환급금의 중도인출」및「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② 기본계약에 단체취급 특별약관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대하여도 단체취급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또한, 기본계약이 단체보험인 경우에는 단체보험과 관련된 사항을 따릅니다.